|  |  |  |
| --- | --- | --- |
|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잠행규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령 제66호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잠행규정>은 2013년 10월 14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이를 지금 발표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양동량  2014년 1월 3일  **제1장 총 칙**  **제1조** 식품생산기업의 안전생산 업무를 강화하고, 생산안전 사고를 예방 및 감소시키며, 업계 종사인원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등 유관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식품생산기업의 안전생산과 그 감독관리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농부산물이 재배 및 양식단계에서 도소매 시장 또는 생산가공기업에 제공되기 전까지의 안전생산 및 감독관리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본 규정에서의 식품생산기업은 농업, 어업, 목축업, 임업 또는 화학공업 제품, 반제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공업화된 가공, 제작을 거쳐 사람들에게 식용 또는 음용 물품을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제3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식품생산기업의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과 유관 부처(이하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로 통칭)는 해당 등급 인민정부가 정한 직책에 따라 속지 감독관리, 등급별 책임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에 소재하는 식품생산기업의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식품생산기업의 공정건설 안전, 소방안전 및 특수설비 안전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문이 전문적인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4조** 식품생산기업은 안전생산 책임주체이며, 주요책임자는 해당 기업의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전면적인 책임을 진다. 안전생산업무를 분업 관리하는 책임자와 기타 책임자는 그 직책 범위 내의 안전생산업무를 책임진다.  집단기업은 소속 또는 지분을 통제하는 식품생산기업의 안전생산업무에 대해 주관 책임을 진다.  **제2장 안전생산의 기본요구**  **제5조** 식품생산기업은 유관 안전생산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표준, 산업표준의 규정을 준수하고 완전한 안전생산 책임제도, 안전생산 규장제도 및 안전조작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 종업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식품생산기업은 안전생산 관리기구를 설치하고, 3명 이상의 전임 안전생산 관리인원을 배치하고, 최소한 1명의 등록 안전공정사를 배치해야 한다.  전항 규정 이외의 기타 식품생산기업은 등록 안전공정사, 전임 또는 겸임 안전생산 관리인원을 배치하거나 또는 안전생산 중개기구에 위탁하여 안전생산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7조** 식품생산기업은 안전생산 관리기구와 전임 안전생산 관리인원이 관리직책을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업무 전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을 보증해야 한다.  대형 식품생산기업의 안전생산 관리기구 주책임자의 임면은 동시에 소재지 현급 지방인민정부의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에 참조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식품생산기업은 안전생산 표준화 건설을 추진하고, 안전생산 기초를 강화하며, 안전생산 표준화, 시설 설비 표준화, 작업현장 표준화 및 작업행위 표준화를 실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본질적인 안전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한다.  **제9조** 식품생산기업 신축, 재건축 및 확장건축 건설프로젝트(이하 “건설프로젝트”로 통칭)의 안전시설은 반드시 주공정과 함께 설계 및 시공되고 동시에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되어야 한다. 건설프로젝트가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된 후 5업무일 이내에 소재지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식품생산기업은 국가가 정한 자격을 구비한 공정설계단위, 시공단위 및 감리단위에 위탁하여 건설공정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를 진행해야 한다.  공정설계단위, 시공단위 및 감리단위는 유관 법률, 행정법규, 국가 표준 또는 산업표준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진행하고, 그 업무 성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1조** 식품생산기업은 유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정건설, 소방, 특수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관 부처의 심의비준과 검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유관 부처에 신청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유관 부처의 비준 또는 검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 및 사용에 투입할 수 없다.  **제12조** 식품생산기업은 <생산안전사고 위험조사 관리 잠행규정>에 따라 사고위험 조사 및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사고위험 관리조치, 책임, 자금, 기한 및 예방책을 분명하게 마련하며, 적시에 사고위험을 발견하고 제거해야 한다. 사고위험 조사 관리현황은 사실 그대로 문건으로 기록하여 종업인원에게 통보하고 규정에 따라 소재지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식품생산기업의 가공, 제작 등 프로젝트에 여러 도급 단위, 임차 단위가 있거나 또는 공간이 교차되는 경우에는 도급 단위, 임차 단위의 안전생산업무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협조하고 관리한다. 도급단위, 임차단위는 식품생산기업의 통일적인 관리에 복종해야 하며, 작업현장의 안전생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제14조** 식품생산기업은 신규 채용인원,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업무 복귀, 업무조정, 6개월 이상 경과 후 업무에 복귀하는 종업인원에게 상응하는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안전생산 교육훈련에 합격하지 못한 종업원을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제15조** 식품생산기업은 정기적으로 조직적인 위험원 판별작업을 전개하고, 작업장소에 존재하거나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예방조치 및 사고 응급처치 등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종업인원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은닉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종업인원은 신체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발견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장소에서 철수 할 권리가 있다. 식품생산기업은 이를 이유로 급여를 감봉하거나 복리대우를 축소하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3장 작업과정의 안전관리**  **제16조** 식품생산기업의 작업현장은 아래에서 열거하는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1) 생산시설 설비에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온도, 압력, 유량, liquid level 및 가루와 먼지 농도, 가연 및 유독 기체 농도 등 공정지표가 있는 초성능 경보장치를 배치  (2) 용전설비 시설과 장소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배전설비 시설에 잔여전류 동작 보호장치 또는 기타 감전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  (3) 굽기, 튀김 등 고온과 관련된 시설설비 및 업무포스트에 대하여 필요한 과열방지 자동 경보 차단 및 단열판, 창 등의 보호시설을 도입  (4) 전분 등 가연성 가루와 먼지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와 시설설비에 대하여 불활, 폭발방지, 폭발차단, 폭발유치 등 조치를 취하여 가루와 먼지의 폭발을 방지한다. 현장안전 관리조치와 조건은 <가루와 먼지 폭발방지 안전규정>(GB15577) 등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5) 유류 창고(관), 가스시설, 진공청소기, 압축공기시설, 압력용기, 압력파이프, 케이블터널(홈) 등 중점 방화 폭발방지 위치에 대하여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독 통제, 모니터링, 경보, 방화, 폭발방지, 방독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 부속품과 연쇄장치는 임의로 철거 및 해제할 수 없으며 소리, 빛 경보 등 신호를 임의로 차단할 수 없다.  (6) 제냉작업장은 <냉동창고 설계규범>(GB50072), <냉동창고 안전규정>(GB28009) 등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기체농도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제냉 전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사고 통풍기와 연동되어야 한다. 포장작업장, 분리작업장 등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암모니아 직접증발의 제냉시스템 도입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제17조** 식품생산기업이 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 및 사용하는 경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의 규정을 엄격하게 따르고 위험화학품의 종류 및 위험특성에 따라 생산, 저장 및 사용장소에 상응하는 모니터링, 감독통제, 통풍, 햇빛방지, 온도조절, 방화, 소화, 폭발방지, 강압, 방독, 중화, 습기방지, 낙뢰방지, 정전방지, 부패방지, 유출방지 및 보호제방 등의 안전시설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안전시설 설비에 대하여 일상적인 유지보수를 진행하여 정상운행을 보증해야 한다.  식품생산기업의 중간제품이 위험화학품인 경우에는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위험화학품 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18조** 식품생산기업은 정기적으로 작업장소, 창고, 설비시설 사용, 종업인원의 증서보유, 노동보호용품 배치 및 사용, 위험원 관리현황에 대한 검사를 조직하여 진행하고, 검사에서 발견된 문제를 즉시 정돈해야 한다. 즉시 정돈 및 개선할 수 없는 경우, 상응하는 예방조치와 정돈개선 계획을 제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정돈개선을 완성한다. 검사내용을 기록하고 관련인원이 서명한다.  **제19조** 식품생산기업은 일상적인 소방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유관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을 완전하고 유효하게 배치 및 유지해야 한다. 생산 작업현장에 표지가 있는 분명하고,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안전출구와 비상통로를 설치해야 하며, 생산작업 장소내의 안전출구와 비상통로의 봉쇄 및 차단을 금지해야 한다.  **제20조** 식품생산기업은 안전기술규범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특수설비를 사용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유관 부처에 등기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식품생산기업은 위험요인이 있는 장소와 유관 시설, 설비에 분명한 안전경고표지 및 경고설명을 부착해야 한다.  **제21조** 식품생산기업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거나 기중기 등을 이용하여 조립작업을 진행하거나 고압변전선로 부근에서 작업을 하거나 전기/가스용접 등 불을 이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오수조 등 유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심사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전문인력을 배정하여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현장안전 관리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와 행정 법률집행인은 직책범위 내에서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유관 안전생산 법률, 행정법규,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의 위반행위, 본 규정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에 의거해 행정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제23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는 식품생산기업을 연도별 법집행 업무계획에 포함시키고 검사 중점기업, 핵심사항, 시간과 기준을 분명하게 하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중대한 사고위험에 대하여 공시 감독을 실시한다.  **제24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는 식품생산기업이 보고한 중대 사고위험을 접수한 후 필요에 따라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식품생산기업이 관리방안에 따라 사고위험을 제거하고 사고발생을 방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식품생산기업에 임시 조업 및 작업중단 또는 사용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중대 사고위험이 정리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의 심사동의를 득한 후에야 비로소 생산경영 및 사용을 회복할 수 있다.  **제25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는 식품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정건설, 소방 및 특수설비 등 영역의 사고위험이나 위법행위의 존재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해당 등급 인민정부 유관부처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6조** 식품생산기업에 아래에서 열거하는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며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본 규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형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관리기구의 주요책임자 임면을 동시에 소재지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에 참조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본 규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프로젝트가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된 후 5업무일 이내에 소재지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본 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위험 조사 관리현황을 사실 그대로 문서에 기록하고 종업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27조** 식품생산기업이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에서 정한 안전생산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생산중단 및 정리개선 후에도 여전히 안전생산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는 해당 등급 인민정부에 법에 따른 폐쇄를 제청해야 한다.  **제28조** 감독검사인원이 식품생산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하면서 직권남용, 직무소홀, 사리사욕 추구를 하는 경우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9조** 본 규정의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생산기업 안전생산 감독관리 책임부처가 실시한다. 유관 법률, 법규 및 규장에서 행정처벌의 종류, 수준, 결정기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장 부 칙**  **제30조**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监督管理暂行规定**  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令第66号  《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监督管理暂行规定》已经2013年10月14日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局长办公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4年3月1日起施行。  局长 杨栋梁  2014年1月3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食品生产企业的安全生产工作，预防和减少生产安全事故，保障从业人员的生命和财产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等有关法律、行政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食品生产企业的安全生产及其监督管理，适用本规定。农副产品从种植养殖环节进入批发、零售市场或者生产加工企业前的安全生产及其监督管理，不适用本规定。  本规定所称食品生产企业，是指以农业、渔业、畜牧业、林业或者化学工业的产品、半成品为原料，通过工业化加工、制作，为人们提供食用或者饮用的物品的企业。  **第三条** 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对全国食品生产企业的安全生产工作实施监督管理。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有关部门（以下统称负责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监管的部门）根据本级人民政府规定的职责，按照属地监管、分级负责的原则，对本行政区域内食品生产企业的安全生产工作实施监督管理。  食品生产企业的工程建设安全、消防安全和特种设备安全，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相关部门负责专项监督管理。  **第四条** 食品生产企业是安全生产的责任主体，其主要负责人对本企业的安全生产工作全面负责，分管安全生产工作的负责人和其他负责人对其职责范围内的安全生产工作负责。  集团公司对其所属或者控股的食品生产企业的安全生产工作负主管责任。  **第二章 安全生产的基本要求**  **第五条** 食品生产企业应当严格遵守有关安全生产法律、行政法规和国家标准、行业标准的规定，建立健全安全生产责任制、安全生产规章制度和安全操作规程。  **第六条** 从业人员超过300人的食品生产企业，应当设置安全生产管理机构，配备3名以上专职安全生产管理人员，并至少配备1名注册安全工程师。  前款规定以外的其他食品生产企业，应当配备注册安全工程师、专职或者兼职安全生产管理人员，或者委托安全生产中介机构提供安全生产服务。  **第七条** 食品生产企业应当支持安全生产管理机构和专职安全生产管理人员履行管理职责，并保证其开展工作所必须的条件。  大型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管理机构主要负责人的任免，应当同时抄告所在地县级地方人民政府负责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监管的部门。  **第八条** 食品生产企业应当推进安全生产标准化建设，强化安全生产基础，做到安全管理标准化、设施设备标准化、作业现场标准化和作业行为标准化，并持续改进，不断提高企业本质安全水平。  **第九条** 食品生产企业新建、改建和扩建建设项目（以下统称建设项目）的安全设施，必须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生产和使用。建设项目投入生产和使用后，应当在5个工作日内报告所在地负责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监管的部门。  **第十条** 食品生产企业应当委托具备国家规定资质的工程设计单位、施工单位和监理单位，对建设工程进行设计、施工和监理。  工程设计单位、施工单位和监理单位应当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规定进行设计、施工和监理，并对其工作成果负责。  **第十一条** 食品生产企业应当按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加强工程建设、消防、特种设备的安全管理；对于需要有关部门审批和验收的事项，应当依法向有关部门提出申请；未经有关部门依法批准或者验收合格的，不得投入生产和使用。  **第十二条** 食品生产企业应当按照《生产安全事故隐患排查治理暂行规定》建立事故隐患排查治理制度，明确事故隐患治理的措施、责任、资金、时限和预案，及时发现并消除事故隐患。事故隐患排查治理情况应当如实记录在案，向从业人员通报，并按规定报告所在地负责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监管的部门。  **第十三条** 食品生产企业的加工、制作等项目有多个承包单位、承租单位，或者存在空间交叉的，应当对承包单位、承租单位的安全生产工作进行统一协调、管理。承包单位、承租单位应当服从食品生产企业的统一管理，并对作业现场的安全生产负责。  **第十四条** 食品生产企业应当对新录用、季节性复工、调整工作岗位和离岗半年以上重新上岗的从业人员，进行相应的安全生产教育培训。未经安全生产教育培训合格的从业人员，不得上岗作业。  **第十五条** 食品生产企业应当定期组织开展危险源辨识，并将其工作场所存在和作业过程中可能产生的危险因素、防范措施和事故应急措施等如实书面告知从业人员，不得隐瞒或者欺骗。  从业人员发现直接危及人身安全的紧急情况时，有权停止作业或者在采取可能的应急措施后撤离作业场所。食品生产企业不得因此降低其工资、福利待遇或者解除劳动合同。  **第三章 作业过程的安全管理**  **第十六条** 食品生产企业的作业场所应当符合下列要求：  （一）生产设施设备，按照国家有关规定配备有温度、压力、流量、液位以及粉尘浓度、可燃和有毒气体浓度等工艺指标的超限报警装置；  （二）用电设备设施和场所，采取保护措施，并在配电设备设施上安装剩余电流动作保护装置或者其他防止触电的装置；  （三）涉及烘制、油炸等高温的设施设备和岗位，采用必要的防过热自动报警切断和隔热板、墙等保护设施；  （四）涉及淀粉等可燃性粉尘爆炸危险的场所、设施设备，采用惰化、抑爆、阻爆、泄爆等措施防止粉尘爆炸，现场安全管理措施和条件符合《粉尘防爆安全规程》（GB15577）等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要求；  （五）油库（罐）、燃气站、除尘器、压缩空气站、压力容器、压力管道、电缆隧道（沟）等重点防火防爆部位，采取有效、可靠的监控、监测、预警、防火、防爆、防毒等安全措施。安全附件和联锁装置不得随意拆弃和解除，声、光报警等信号不得随意切断；  （六）制冷车间符合《冷库设计规范》（GB50072）、《冷库安全规程》（GB28009）等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规定，设置气体浓度报警装置，且与制冷电机联锁、与事故排风机联动。在包装间、分割间等人员密集场所，严禁采用氨直接蒸发的制冷系统。  **第十七条** 食品生产企业涉及生产、储存和使用危险化学品的，应当严格按照《危险化学品安全管理条例》等法律、行政法规、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规定，根据危险化学品的种类和危险特性，在生产、储存和使用场所设置相应的监测、监控、通风、防晒、调温、防火、灭火、防爆、泄压、防毒、中和、防潮、防雷、防静电、防腐、防泄漏以及防护围堤等安全设施设备，并对安全设施设备进行经常性维护保养，保证其正常运行。  食品生产企业的中间产品为危险化学品的，应当依照有关规定取得危险化学品安全生产许可证。  **第十八条** 食品生产企业应当定期组织对作业场所、仓库、设备设施使用、从业人员持证、劳动防护用品配备和使用、危险源管理情况进行检查，对检查发现的问题应当立即整改；不能立即整改的，应当制定相应的防范措施和整改计划，限期整改。检查应当作好记录，并由有关人员签字。  **第十九条** 食品生产企业应当加强日常消防安全管理，按照有关规定配置并保持消防设施完好有效。生产作业场所应当设有标志明显、符合要求的安全出口和疏散通道，禁止封堵、锁闭生产作业场所的安全出口和疏散通道。  **第二十条** 食品生产企业应当使用符合安全技术规范要求的特种设备，并按照国家规定向有关部门登记，进行定期检验。  食品生产企业应当在有危险因素的场所和有关设施、设备上设置明显的安全警示标志和警示说明。  **第二十一条** 食品生产企业进行高处作业、吊装作业、临近高压输电线路作业、电焊气焊等动火作业，以及在污水池等有限空间内作业的，应当实行作业审批制度，安排专门人员负责现场安全管理，落实现场安全管理措施。  **第四章 监督管理**  **第二十二条** 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监管的部门及其行政执法人员应当在其职责范围内加强对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的监督检查，对违反有关安全生产法律、行政法规、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和本规定的违法行为，依法实施行政处罚。  **第二十三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监管的部门应当将食品生产企业纳入年度执法工作计划，明确检查的重点企业、关键事项、时间和标准，对检查中发现的重大事故隐患实施挂牌督办。  **第二十四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监管的部门接到食品生产企业报告的重大事故隐患后，应当根据需要，进行现场核查，督促食品生产企业按照治理方案排除事故隐患，防止事故发生；必要时，可以责令食品生产企业暂时停产停业或者停止使用；重大事故隐患治理后，经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监管的部门审查同意，方可恢复生产经营和使用。  **第二十五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监管的部门对食品生产企业进行监督检查时，发现其存在工程建设、消防和特种设备等方面的事故隐患或者违法行为的，应当及时移送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处理。  **第五章 法律责任**  **第二十六条** 食品生产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限期改正，可以处2万元以下的罚款：  （一）违反本规定第七条的规定，大型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管理机构主要负责人的任免，未同时抄告所在地负责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监管的部门的；  （二）违反本规定第九条的规定，建设项目投入生产和使用后，未在5个工作日内报告所在地负责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监管的部门的；  （三）违反本规定第十二条的规定，事故隐患排查治理情况未如实记录在案，并向从业人员通报的。  **第二十七条** 食品生产企业不具备法律、行政法规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规定的安全生产条件，经停产整顿后仍不具备安全生产条件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监管的部门应当提请本级人民政府依法予以关闭。  **第二十八条** 监督检查人员在对食品生产企业进行监督检查时，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照有关规定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九条** 本规定的行政处罚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食品生产企业安全生产监管的部门实施，有关法律、法规和规章对行政处罚的种类、幅度和决定机关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六章 附 则**  **第三十条** 本规定自2014年3月1日起施行。 |